

공고 제 호

[] 통행의 금지·제한
[] 차량의 운행 제한] 공고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·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[] 통행의 금지·제한
[]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
합니다.

년 월 일

공고자

직인

도로의 종류		노선명	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	구간	
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이유			
그 밖의 사항			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			